

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(제13조제3항 관련)

1. 색상 내후성: 등록번호표의 색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을 720시간 할 경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.
 - 가. 방사조도: $0.35\text{W}/\text{m}^2$
 - 나. 파장범위: 340nm(제논 아크등)
 - 다. 시험주기: 빛에 노출/물분사(18분), 빛에 노출(102분)
 - 라. 시험온도: $63 \pm 3^\circ\text{C}$
 - 마. 습도: $50 \pm 5\%$
2. 내마모성: 등록번호표의 문자 색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을 할 경우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.
 - 가. 등록번호표와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리: $380 \pm 10\text{mm}$
 - 나. 모래분사노즐 직경: 1.3mm
 - 다. 물과 모래 혼합액: 물 1ℓ 당 0.4mm 크기 표준 모래 25g
 - 라. 노즐을 0.1m/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번호표에 작동압력 $6.0 \pm 0.5\text{bar}$, 유동율 $0.24 \pm 0.02\text{ℓ}/\text{min}$ 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킨다.
 - 마.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형질으로 등록번호표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표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.
3. 방수성: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표의 표면에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.
 - 가. 등록번호표를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를 상온에서 65°C 까지 올리고 65°C 에서 10분 동안 유지한다.
 - 나. 등록번호표를 챔버에서 꺼내 21°C 의 물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부드러운 형질으로 등록번호표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표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.
4. 인식성: 등록번호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·운용 중인 무인단속 장비시스템 및 민간 등에서 설치·운용 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·관리되어야 한다.